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1. 8. 서영교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 2024. 11.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2. 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9.)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2. 9.)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습니다.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형사 본안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각국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재판지연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 육아휴직 법관의 증가 및 신규 법원 설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판사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판지연 문제는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함께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정원을 90명 확대하는 것이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의원)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법률 제 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3,214명”을 “3,58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60명의 증원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 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u>3,214명</u> 으로 한다.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 ----- ----- ----- <u>3,584명</u> -----.